

1. 개정이유

군(郡) 지역에 대형 승합택시 도입(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23.8))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제고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택시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1개 시·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관할관청 명확화(안 제3조제3항)
1개 시·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의 관할관청을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화
- 나. 군(郡) 지역 대형승합택시 허용(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군(郡)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삭제
- 다. 택시관련 법정위원회 정비 후속조치 (안 제10조제3항)
사업구역심의위원회가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조정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수정
- 마.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범위 명확화(안 제103조제5호)
국가·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이

가능하나, 장애인 등의 범위를 교통약자까지 확대
사. 모범운전자 보수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 4의3)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에 한하여 보수교육 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1개 시·도인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조제1호다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영 제3조제1호가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 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영 제3조제1호다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중 “법 제5조의2제4항”을 “법 제5조의3제4항”으로,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영 제3조제2호가목”을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03조제5호 중 “장애인 등의”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중 “승합자동차, 다만,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를 “승합자동차”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나목의 교육 대상자란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⑦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⑨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⑦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

1. ~ 6. (현행과 같음)

⑧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

1. ~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3. (생략)
-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나. (생략)

5.·6. (생략)

② (생략)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 <단서 삭제>

가.·나.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 --

-----.

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
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
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
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
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
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22조(등록신청) ①·② (생략)

③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
정책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① 영 제3조제1항제2호라
목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등록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 (생략)

3.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기간 동안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거부

④ (생략)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5조의3제4항-----

----- 법 제5조의3제3항-----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

----- 영 제3조 제1항제2호가목 -----

으로 한다.

② ~ ⑨ (생략)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
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
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
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 4의2. (생략)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
송 등의 허가요건) -----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교통약자 -----

--